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19 선고 2020가단1443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9. 28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9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72,566,459원 및 그 중 28,851,307원에 대하여 2020. 7. 30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‘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/130 지분’, ‘별지 목록 제2항, 제4항, 제6항 및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/273 지분’, ‘별지 목록 제3항, 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’ 및 ‘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중 118/1547 지분’에 관하여
가.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7. 4. 5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나. 피고 C : 민사소송법
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